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제안이유

-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는 군 작전시설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시설투자가 미약하여 관광객의 편익시설조차 열악한 상태이며, 2002년 월드컵등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관광객을 더욱 유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운영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 따라서, 제3땅굴 관광개발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현행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의 시설관리 및 운영방안을 개선함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시설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정함. (안 제3조)
- 사용료의 면제대상을 규정함. (안 제4조)
- 사용료 징수에 관한 위탁관리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땅굴발견이후 지금까지 특별한 편익시설 투자가 없는 가운데 관할 군부대와 재향군인회의 출입통제하에 제한된 단체버스 관광을 운영해 왔으나 파주시가 보다 체계화된 관광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000년 7월15일 민북지역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동안 국방부와 육군본부, 관할사단, 재향군인회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 지난해 월드컵 관광특수에 대비하여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를 중심으로한 민북지역 관광개발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하고자 금년 1월부터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의 각종 시설개선사업에 착수함에 따라 시설관리 및 운영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임.
- 시설사용료의 징수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사용료) 및 동법 제130조(사용료의 징수조례등)와 지방재정법 제26조(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에 의거 자치단체 조례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사용하게 될 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한 동 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법령적합성과 내용면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법

제127조 (사용료) 地方自治團體는 公共施設의 이용 또는 財産의 사용에 대하여 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26조 (國家의 公共施設에 관한 使用料) ①地方自治團體 또는 그 長이 管理하는 國家의 公共施設로서 地方自治團體가 그 管理에 소요되는 經費를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는 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地方自治團體 또는 그 長은 條例 또는 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公共施設의 사용에 대한 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한 使用料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收入으로 한다.